

의안번호	2218659
의 퇴 인	이언주의원
회 답 일	2026.7.14
추 계 번호	26D237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8억 6,400만원, 2028년 8억 8,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5억 100만원(연평균 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변호사예비시험 실시 경비 (안 제5조의2)	861	879	897	915	933	4,48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안 제14조 및 제15조)	3	3	3	3	3	15
합계	864	882	890	918	936	4,5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 (변호사예비시험)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예비시험 합격자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변호사예비시험의 관리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2 (변호사예비시험)	○	-
2	안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포함)의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변호사시험 관련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
- 개정안은 변호사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선발 예정인원의 상한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2,000명)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호사예비시험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행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증가되어 변호사시험 실시에 소요되는 노트북 및 시험장 임차료, 시험감독관 수당 등 비용 또한 증가될 것임¹⁾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변호사예비시험의 합격자 수²⁾ 및 이에 따라 증가되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인원과 소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비가 아니므로 관련 경비는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1) 참고로 최근 2회 실시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수 및 예산 집행액 등은 다음과 같음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출원자 수	예산 집행액	응시수수료 수입액
2024년	3,736	4,743	696
2025년	3,763	4,819	815

자료: 법무부

2)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은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2,000명)의 5분의 1인 400명

- 변호사예비시험 관련 응시수수료 수입액은 추계에서 제외
 -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수입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시점에서 수입액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³⁾
 - 또한 과거 사법시험 및 현행 변호사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입이 수입대체경비로 운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예비시험의 응시수수료 또한 국고로 귀속되어 예비시험의 집행경비와 별도로 운용될 것임
 - 따라서 변호사예비시험 관련 응시수수료 수입액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⁴⁾
- 개정안 부칙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변호사예비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과거 사법시험의 실시에 소요된 경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
 - 변호사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인 점에서 변호사예비시험의 응시자 수는 과거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시험이 병행 실시될 당시의 사법시험 응시자 수와 유사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3회 동안 실시된 사법시험의 응시자 수 및 시험실시에 소요된 경비는 다음의 표와 같음

3) 참고로 과거 사법시험의 응시수수료는 5만원이었고, 현행 변호사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0만원임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1.9%	1.5%	0.4%	0.5%	2.5%	5.1%	3.6%	2.3%	2.1%	2.3%	2.0%

[표 2] 사법시험 응시자 수 및 소요 경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응시자 수	소요 경비 ²⁾
2015년	4,795	1,401
2016년	3,411	1,312
2017년 ¹⁾	241	643

주: 1) 2017년의 경우 사법시험이 실시된 마지막 해로 2016년도 1차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시험 실시
 2) 법무부에 따르면 시험단계별 소요 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시험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예비시험에 대한 경비는 시험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사법시험의 전체 집행액을 바탕으로 추계된 경비보다 줄어든 수 있을 것임
 자료: 법무부

- 개정안은 예비시험을 선택형(기입형 포함)으로 하고 있어, 舊 사법시험의 1차 시험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1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각 시험단계별 소요 경비의 집행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부재하여 정확한 비용 산정이 어려움.⁵⁾ 따라서 과거 사법시험 소요 경비의 50%가 1차시험 소요비용이라고 가정하여 추계함.
- 2015년 및 2016년도 사법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연 평균 경비는 13억 5,700만원⁶⁾으로 이 값의 50%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변호사예비시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음

[표 3] 변호사예비시험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변호사예비시험 실시 경비	861	879	897	915	933	4,4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변호사예비시험 실시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추가 개최 재정 소요는 현재 1인당 지급수당금액에 위원 수를 곱하여 산출
- 개정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 선정 등

5) 1차시험은 응시인원이 많아 시험 운영에 필요한 관리감독 및 시험장 운영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반면, 2차시험은 논술형 문제로 문제출제 및 채점절차가 복잡하고 시험기간이 길어 출제·채점 등 시험 운용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 있음.

6) 2017년도의 경우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평균값에서 제외함

변호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회의 추가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것임

- 변호사예비시험이 매년 1회 개최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회의 개최 횟수는 연 1회로 가정함. 회의 개최 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현재 1인당 20만원이고, 추계기간동안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수도 현재 15명 수준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비용은 연 1회×15명×20만원 =300만원으로 추계함.

[표 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추가 회의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3	3	3	3	3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8억 6,400만원, 2028년 8억 8,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5억 100만원(연평균 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변호사예비시험 실시 경비	861	879	897	915	933	4,48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3	3	3	3	3	15
합계	864	882	890	918	936	4,5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과거 사법시험 실시 집행액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시험 실시방식, 응시인원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광근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광근	02-6788-4831	kklee@nabo.go.kr